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5.9.2(수) 10:00

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**산 업 경 제 위 원 회**  
**수석전문위원 신선기**

#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### 3. 제안 이유

-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 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, 수산사업 실시, 공공기관 유치,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# 4. 주요내용

가. 종합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

- 도지사는 5년마다 해양 및 내수면 육성 종합계획 수립

나. 심의위원회 구성 (안 제6조)

-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
-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, 정책 조정, 중요사항 심의 등

다.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유치 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시설부지 확보 및 시설 건립 등의 비용 일부 지원 가능

라. 육성사업의 지원 (안 제12조)

- 사업대상자 : 기초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단체, 어업인 등
-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사업비 일부 지원 가능

마. 해양 및 내수면 문화 창달 (안 제14조)

- 국제행사 및 도민교육, 축제, 기반시설 등 사업비 일부 지원 가능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'은 바다가 없는 충청도가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, 수산사업 실시, 공공기관 유치,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  
- 다만, 9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6년부터 5년간 안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충청도의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,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치,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지원, 해양 및 내수면 산업·문화의 창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